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행정자치위원회 이숙자 의원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서초2 선거구 행정자치위원회 이숙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합건물은 다수의 소유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특성을 가지며,
이에 따른 분쟁과 행정 절차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
지만 현행 조례는 관련 법령과 일부 중복되거나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명확하게 반영하지 못해 행정 집행의 실효성이 부족한 실
정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을 통해 집합건물 관리 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법적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첫째, 조례 제8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2항에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조례의 관련 조항이 중복되거나 법에서 벗어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삭제함으로써 법적 정합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둘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비용 부담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5항에서 조정 비용 관련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행 조례에는 관련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에 분쟁 조정 비용을 당사자 간 합의된 비율에 따라 사전에 납부하도록 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원회에서 부담 비율을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분쟁 조정 절차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집합건물 관리 체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법률과 조례 간 정합성을 확보하여 실효성 있는 행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의 집합건물 관

리 체계가 보다 명확해지고, 시민들의 주거 환경이 보다 안정적으로 조성될 수 있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